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~9.(생략)</p> <p>10.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~9.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</p> <p>1.·2.(생략)</p>	<p>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 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·2.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2조(환매수수료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2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42조(환매수수료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A클래스·C1클래스·C2클래스·C3클래스·C4클래스·C5클래스·Ce클래스·W클래스·I클래스·S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가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나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 <p>2. Cp클래스 수익증권 : 환매수수료 없음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	<p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

<p>①(생략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③·④(생략)</p>	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 <p><u>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</u></p> <p><u>④·⑤(호번변경)</u></p>
<p><신설></p>	<p>부칙</p> <p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</p>